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4.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4. 22.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배용식 의원 외 12인
- 발의일자 : 2020. 2. 13.
- 회부일자 : 2020. 4. 9.
- 검토기간 : 2020. 4. 10. ~ 2020. 4. 17.

2. 제정이유

- 대형 서점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 등으로 인하여 관내 지역서점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서점’ 용어 정의 (안 제2조)
- 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다. 지역서점 창업상담 등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 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관련 규정 (안 제7조)

4. 관계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

5. 검토의견

- 현재 대형 서점의 중·소도시로의 영업장 확대 추세와 더불어 온라인 서점의 활성화 등의 사유로 지역 중·소 서점 경우 전국적으로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지역 중·소 서점의 몰락은 궁극적으로 달서구 관내의 (독서)문화 환경의 위축과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 서점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안 제2조)에 대해 구청장은 경영안정 지원 계획을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도록 하는 한편, 보다 구체적 방안으로 창업 상담 및 교육, 판로 환경 개선 컨설팅 등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다양한 지원책과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안 제6조)도록 규정.
- 대구광역시에서도 조례안과 같은 취지에서 ‘지역서점인증제¹⁾’를 시행하면서 대구권 지역 서점들을 통한 도서 구매를 독려하는 등 다양한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 비쳐볼 때, 동 조례안 조문별로도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그동안 조례는 없었지만, 집행부는 지역 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 이들에게서 도서를 구입하여 왔음²⁾.
- 따라서 집행부는 새로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 이들 중소 서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위한 보다 내실 있는 시책들을 마련 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1) 2019년 9월부터 시행. 자료에 따르면, 현재 96개소 (중구 7, 동구 11, 서구 5, 남구 2, 북구 18, 수성구 24, 달서구 21, 달성군 8곳)가 지정.

2) 2020년 경우, 구 전체 도서구입 예산(5억 270여만 원)대비, 이 중 이들 21개 인증 중소서점 통해 구입할 예산 규모는 약 8,700여만 원 수준.

【 관 계 법령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지원
3.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5.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6.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7. 만화산업의 육성·지원
8. 서점(書店) 및 제본업(製本業) 등의 지원